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4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686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8. 2. 27.
판 결 선 고	2018. 3. 20.

주 문

1.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411,98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972,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13. 설립된 주식회사 B(변경 전 회사명 : 주식회사 C설립, 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2012년경 B의 주식 60,000주 중 24,000주는 원고가, 22,780주는 원고의 처인 D가, 11,400주는 E이, 1,820주는 대한민국(기획재정부)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5. 12. 30. E으로부터 11,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이전받았다.

다. 피고는 B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B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2015. 12. 30.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지분이 40.0%에서 59.0%로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와 특수관계인(배우자 D)이 보유한 주식지분율 합계가 81.0%에서 96.97%로 15.97% 증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6. 28.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B 소유의 취득세 과세물건의 장부가액에 원고의 지분율 증가분 15.97%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1,411,980원(가산세 2,645,9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972,010원(가산세 107,4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당초 원고가 E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5. 12. 30. 명의신탁약정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4

해지하고 원고의 명의로 이전한 것인바, 실질적으로 원고 보유의 주식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4

2) 판단

갑 제1, 3 내지 8,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주식을 E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5. 12. 30.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원고의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의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주식 중 2,400주는 1997. 1.경, 6,000주는 1999. 12.경, 3,000주는 2003. 12.경 취득한 것인데, 위 각 일자 무렵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위 주식인수대금과 원고 명의로 취득한 주식 대금의 합계액과 유사한 금액이 인출되었고, E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출연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E은 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한 적이 없다.

②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0752호로 E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5. 3. 26.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4

받았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2015. 12. 18. [redacted] [redacted]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2016. 2.경 원고의 자금으로 증여세 32,658,610원을 납부하였다.

④ 또한 E은 2014. 12. 2.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14. 12. 24.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취지가 기재된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2017. 12.경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원고에게 반환했다는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는 등 일관되게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당우증

판사 정종건

판사 최유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4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14

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 생략) 끝.